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08
----------	------

제출연월일: 2026. 8. 21.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입화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휴양관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 기준, 위탁관리 규정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휴양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위임 조항 구체화 및 정의 보완(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설 명칭 현행화 및 별도 명칭 병행 가능 조항 추가(안 제4조)
- 다. 휴장일 기준 정비(안 제5조, 별표 3)
- 라. 시설별 이용시간 변경(안 제6조)
- 마. 시설 특성을 고려한 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9조)
- 바. 예약제외 시설물 규정 변경(안 제11조)
- 사. 위탁관리 조항 세분화 및 법령 근거 명확화(안 제19조)
- 아. 규제의 재검토 조문 신설(안 제20조)
- 자. 산림휴양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1)
- 차. 사용료 감면 기준 근거 조례명 현행화 및 전국민대상 다자녀 수 기준 완화(안 별표 4)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22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관리 조례」 제9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실-10597(2026. 7. 2.)호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30194(2026. 7. 30.)호

라. 입법예고: 2026. 7. 24. ~ 2026. 8. 13.(20일간) / 의견있음

- 의견반영 여부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이○○ (울주군 범서읍)	○ 별표 4의 제3호 가목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 전 국민 대상) → 정부의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정책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되는 추세 반영해 주기 바람	○ 의견 반영 별표 4의 제3호 가목 3. 100분의 30 경감 가. <u>가족관계등록부에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 전 국민 대상)</u>
	○ 별표 4의 제2호 차목 및 제2호 나목 괄호(※) 내용 삭제 → 관련 조례인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정의가 향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재정의될 수 있고, 관련 조례 개정될 때마다 본 조례를 매번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므로 단서조항 삭제필요	○ 의견 반영 별표 4의 제2호 차목 및 제2호 나목 불필요한 단서조항 삭제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과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야영장(카라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휴양림 및”을 “휴양림,”으로, “카라반”을 “산림휴양관, 카라반”으로 한다.

2. “휴양림”이란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 47-1번지 일원에 조성한 휴양림을 말한다.

7. “누리집”이란 휴양림 및 야영장의 예약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산림청 숲나들e 통합예약시스템 및 자체 예약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외적인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호 중 “입화산자연휴양림:”을 “입화산산림휴양관:”으로, “산47-1번지”를 “길촌길 33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을 “입화산별뜨락야영장:”으로, “337 및 333-1”을 “337”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입화산제2야영장:”을 “입화산제2오토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태화연야영장:”을 “태화연오토야영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휴양림과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은 매주 1일”을 “산림휴양관, 별뜨락야영장은 매주 1회”로, “2일”을 “2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양림 및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휴양림과 야영장의 효율적 운영”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오후 2시 까지”를 “14시까지”로 한다.

① 산림휴양관, 별뜨락야영장 및 야영장 카라반의 사용시간은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야영시설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13시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사용료”를 “사용료(산림휴양관 다목적실은 별표 4의 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복될 경우”를 “중복되면”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중구사랑의 날 운영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

1. 개·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중구사랑의 날 운영에 필요한 경우
4.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제1호 중 “누리집 관리자”를 “관리자”로, “사용자 인적사항”을 “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자는 예약 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때”를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로, “다음”을 “구청장은 다음”으로 한다.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불가능 할”을 “불가능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

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용권 양도 금지에 대하여 202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과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제21조</u>
			-----	<u>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u>
			<u>9</u> -----	<u>규</u>
			<u>정함</u>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1. “운영자”란 입화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나 야영장(카라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	-----
			-----	-----
			-----	<u>야영장</u> -----
			-----	-----
			-----	-----
			-----	-----
			-----	-----
			-----	-----
			-----	-----
<u><신 설></u>		2.	“휴양림”이란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 47-1번지 일원에 조성한 휴양림을 말한다.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시설”이란 <u>휴양림 및 야영장</u> 내에 있는 <u>카라반, 야영 공간,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전기 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u>을 말한다. 4. 5. (생략) <신설> 6. “<u>누리집</u>”이란 <u>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예약시스템</u>을 말한다. 7. 8. (생략) 제4조(명칭 및 소재지) 운영자가 관리하는 휴양림과 야영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4. ----- -- <u>휴양림</u>, --- <u>산림휴양관, 카라반</u>---.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7. “<u>누리집</u>”이란 <u>휴양림 및 야영장의 예약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산림청 숲나들e 통합예약시스템 및 자체 예약시스템을 포함한다)</u>를 말한다. <삭제> 8. 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제4조(명칭 및 소재지) ----- ----- ----- ---. <u>이 경우, 대외적인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u>
--	---

1. <u>입화산자연휴양림</u>: 울산광역시 중구 <u>산47-1번지</u> 일원 2. <u>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u>: 울산광역시 중구 <u>길촌길 337 및 333-1</u> 일원 3. <u>입화산제2야영장</u>: 울산광역시 중구 <u>길촌길 331-1</u> 일원 4. (생략) 5. <u>태화연야영장</u>: 울산광역시 중구 <u>종가로 66-1</u> 일원 제5조(휴장일) ① 휴양림 및 야영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휴양림과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은 매주 1일, 그 외 야영장은 매주 2일 휴장하며 휴장일은 별표 3과 같다. <단서 신설></u> 2. (생략) ② (생략) 제6조(이용시간 등) ① <u>휴양림 및 야영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u>	1. <u>입화산산림휴양관</u>: ----- ----- <u>길촌길 333</u> ----- 2. <u>입화산별뜨락야영장</u>: ----- ----- <u>337</u> ----- ----- 3. <u>입화산제2오토야영장</u>: ----- ----- 4. (현행과 같음) 5. <u>태화연오토야영장</u>: ----- ----- 제5조(휴장일) ① ----- ----- --. 1. <u>산림휴양관, 별뜨락야영장은 매주 1회----- ----- 2회 -----</u>. 다만, 휴양림 및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시간 등) ① <u>산림휴양관, 별뜨락야영장 및 야영장 카라반의 사용시간은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로 한다.</u>
--	---

② <u>카라반과 야영 공간 사용을 위한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1. <u>카라반</u> 가. <u>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사이</u> 나. <u>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까지</u> 2. <u>야영 공간</u> 가. <u>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사이</u> 나. <u>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후 1시 까지</u> ③ <u>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과 야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u> ④ <u>운영자는 사용자의 편의 제공과 시설사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야영 공간의 이용시간 초과 사용 및 단시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u> 1. (생략) 2. <u>사용일 당일 오후 2시 까지</u> 예약자가 없고 사용자가 단시간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② <u>제1항을 제외한 야영시설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13시까지로 한다.</u> ③ ----- ----- <u>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u> ----- -----. ④ ----- ----- ----- ----- -----. 1. (현행과 같음) 2. ----- <u>14시까지</u> ----- ----- -----
--	---

제9조(사용료 감면) ① 운영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u>사용료</u>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u>중복될 경우</u> 높은 감면을 하나만 적용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운영자는 구에 <u>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행복 나눔 기부단체 또는 개인에게 답례하기 위해 중구사랑의 날 운영을 위한 예약제외 시설물을 둘 수 있다.</u>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운영자는 그 내용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 ----- ----- <u>사용료(산림휴양관 다목적실은 별표 4의 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u>--- ---. --- <u>중복되면</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u>구청장은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중구사랑의 날 운영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u>개·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u> 2. <u>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u> 3. <u>중구사랑의 날 운영에 필요한 경우</u>
--	--

<신 설> ③ 운영자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때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u>누리집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인적사항,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u> 2. <u>누리집 관리자의 지정·해제</u> 3. <u>누리집 관리자 예약·운영실태 자체 점검</u>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운영자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별표2의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4. <u>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u> 5.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시 ----- ----- 구청장은 다음 ----- -----. 1. 관리자 ----- 사용자----- ----- -----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 ----- 불가능할 ----- ----- ----- -----.
---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생 략) 2. 제15조에 의하여 입장제한 및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제19조(위탁관리) 운영자는 휴양림 및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따라서 ----- ----- 제19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편의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

<u><신 설></u>	⑤ <u>구청장은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u>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⑥ <u>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u>
<u><신 설></u>	<u>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 제20조(규제의 재검토) <u>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용권 양도 금지에 대하여 202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별표 1]

(현행)

사용료 징수기준(제8조 관련)

1. 1일 사용료 징수기준

(단위 : 원)

구분	기준	요금			비고
		비수기		성수기	
		평일	주말· 공휴일		
자동차 야영 공간	1개소/1박	25,000	30,000	35,000	※ 평일요금 : 일요일~목요일 ※ 주말·공휴일요금 : 금,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자동차 야영 공간(소형)	1개소/1박	20,000	25,000	30,000	
일반 야영 공간(테크)	1개소/1박	20,000	25,000	30,000	
카라반(4인용)	1동/1박	100,000	120,000	140,000	
카라반(6인용)	1동/1박	120,000	140,000	160,000	
카라반(8인용)	1동/1박	150,000	170,000	200,000	

2. 이용시간 초과 및 단시간 사용료

구분	초과 사용료	비고
초과 1시간 이내	사용료의 10%	조기입실 및 퇴실연장 시 적용
1시간초과 2시간까지	사용료의 20%	
2시간초과 4시간까지	사용료의 30%	
단시간(6시간 이내)	사용료의 40%	이용당일 오후 2시 이후 현장 결제한 자에 한하며, 오후 10시 까지 사용 가능
단시간(8시간 이내)	사용료의 60%	

※ 카라반 시설은 사용할 수 없음

[별표 1]

(개정)

사용료 징수기준(제8조 관련)

1일 사용료 징수기준

(단위 : 원)

구분	기준	요금			비고
		비수기		성수기	
		평일	주말· 공휴일		
산림휴양관 (4인, 2층 객실)	1개소/1박	100,000	120,000	140,000	※ 평일요금 : 일요일~목요일 ※ 주말·공휴일요금 : 금,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산림휴양관 (6인, 3층 객실)	1개소/1박	120,000	140,000	160,000	
자동차 야영 공간	1개소/1박	25,000	30,000	35,000	
자동차 야영 공간(소형)	1개소/1박	20,000	25,000	30,000	
카라반(4인용)	1동/1박	100,000	120,000	140,000	
카라반(6인용)	1동/1박	120,000	140,000	160,000	
카라반(8인용)	1동/1박	150,000	170,000	200,000	
다목적실	4시간 이하	50,000			
	4시간 초과	80,000			

2. 이용시간 초과 및 단시간 사용료

구분	초과 사용료	비고
초과 1시간 이내	사용료의 10%	조기입실 및 퇴실연장 시 적용
1시간초과 2시간까지	사용료의 20%	
2시간초과 4시간까지	사용료의 30%	
단시간(6시간 이내)	사용료의 40%	이용당일 오후 2시 이후 현장 결제한 자에 한하며, 오후 10시 까지 사용 가능
단시간(8시간 이내)	사용료의 60%	

※ 카라반 시설은 사용할 수 없음

[별표 3]

(현행)

휴장일 운영기준(제5조 관련)

명 칭	휴장일수	기 준	비 고
입화산자연휴양림	1일	매주 화요일	※ 휴장 개시일에는 퇴실시간 연장 불가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		매주 수요일~목요일	
입화산제2야영장	2일	매주 화요일~수요일	
황방산생태야영장		매주 수요일~목요일	
태화연야영장			

[별표 3]

(개정)

휴장일 운영기준(제5조 관련)

명 칭	휴장일수	기 준	비 고
입화산산림휴양관	1일	매주 화요일	※ 휴장 개시일에는 퇴실시간 연장 불가
입화산별뜨락야영장			
입화산제2오토야영장	2일	매주 화요일~수요일	
황방산생태야영장		매주 수요일~목요일	
태화연오토야영장		매주 월요일~화요일	

[별표 4]

(현행)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경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차.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3. 100분의 30 경감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 전 국민 대상)

나.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 다.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바.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사. 임산부 배지(badge) 또는 임산부 차량표시 소지자(본인에 한함)
- 아.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자. 울산광역시 중구 행복 나눔 기부자. 단, 최근 2년 간 기부한 누계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기업체의 임직원과 누계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단체 및 개인
- 차.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본사 및 지사 등 포함).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 한하며, 대상기관은 별지와 같다.

4. 100분의 20 경감

- 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별표 4]

(개정)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경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차.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3. 100분의 30 경감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 전 국민 대상)

나.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다.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바.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사. 임산부 배지(badge) 또는 임산부 차량표시 소지자(본인에 한함)

아.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자. 울산광역시 중구 행복 나눔 기부자. 단, 최근 2년 간 기부한 누계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기업체의 임직원과 누계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단체 및 개인

차.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본사 및 지사 등 포함).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 한하며, 대상기관은 별지와 같다.

4. 100분의 20 경감

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근거법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

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
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
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
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
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관리 조례」

- 제9조(규제의 재검토키한 명시)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규제의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규제의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그 규제의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공원녹지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이우민
- 연락처: (052)290-4413